

#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

심의일자	2021. 6. 10.(목) 14:00		
사업명	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(보고)		
신청위치	강남구 청담동 134-1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(구조)2021-9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
## [심의 내용] 구조안전

-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“조건부(보고)완료”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[인·허가권자가 확인](#)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구조안전 분야 >

- 지반의 위치에 따라 토질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, 연약지반이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, 9개의 구조물에 탄성과 시험은 4곳을 실시하였으나, 각 동별로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조건과 내진설계범주를 판단한 정량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.
- 103동, 104동, 105동, 106동, 107동은 층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장주기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장주기로 인하여 지진하중이 과소 평가 될 우려가 있으며, 동적 거동을 지배하는 슬래브 강성은 1차 진동모드가 비틀림으로 판단되어 동별로 진동모드가 포함된 고유치 해석 결과를 확인하고 1차 진동 모드가 비틀림인 경우에는 대안 제시 바람.
- 전이기둥과 전이보 및 전단벽이 만나는 부분은 상세 해석을 통하여 지압과괴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,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시공 상세를 제시 바람.
-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하는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는 부재 전 길이에 걸쳐 소성힌지 구간의 내진상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데, 현재 구조도면의 구조일반사항에는 전이부재에 대한 내진상세가 없으므로 전이부재에 대한 내진상세를 추가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내진상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.
- 보, 기둥 내진상세
  - 보 일람표에서도 ‘내진상세적용 전이보’라고 표기했으나 일반내진상세 적용이 아니라 ‘전이보 내진상세 적용’이라고 정리하여야 함.
  - 기둥 일람표에서 전이기둥은 부재 전 길이에서 후프근이 후프철근형태로 소성한 지구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므로 배근 조정하여 표기 바라고,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기둥부재와 중간모멘트 기둥 내진상세적용 기둥부재는 구분하여 정리 바람.

- 조치계획 3-2번: 전이기둥 일람표에서 'HOOP, DIA. HOOP'는 오기임. '중앙부, 단부 HOOP' 등 적절한 용어로 정리 바람.
- 조치계획 4-3번: 동별 구조안전확인서 작성 시 기초에 대한 내용이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됨. 동별 설계 시 적용한 기초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바람.
- 조치계획 4-8번: 층 차이나는 구간 단면상세에 스테럽이 비틀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스테럽이 폐쇄형으로 설치하도록 '폐쇄형' 표기 바람.
- 조치계획 4-10번: 보가 없는 슬래브에서는 양방향으로 기둥 내에 최소한 2대의 하부철근이 외부받침부까지 연속되어야 하므로 현재 슬래브 배근에서 오프닝 설치 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(오프닝을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동 가능한지 건축과 협의), 이외에도 슬래브 오프닝으로 주근이 잘려서 보강근 배치 시 시공상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.
-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지붕슬래브는 시공성 고려해서 데크슬래브로 변경 검토 바람.
- 수영장의 SRC33 기둥이 RC31 기둥 상부에 설치되는 것인지 확인하고, 합성기둥의 주각위치 확인하고 주각부 설계 추가 바람.
- SRC46 기둥이 SG41 철골보에 얹히는데, 철골보 검토자료와 합성기둥의 주근이 어떻게 정착되는지 상세 작성 바람(접합부 상세 보완하기 바람).
- 수영장의 SG30 거더가 철골거더인지, 합성보 G30 거더인지 도서를 명확히 정리 바람.
- 골프연습장 단면도(S-5033)에서 지붕층 G41이 합성보로 그려지므로 구조계획 검토바람.
- 기둥일람표 중 일부 기둥에 주근 HD25로 노트하고 주근에 HD22로 표기되었으므로 확인 바람(105동 TC2, TC11, 106동 AC82).    끝.